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8. 9.(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 (2인)

불참위원 : 김 현 상임위원 (1인)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 현 위원님께서서는 비서관을 통해서 회의 불참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전차회의록 및 속기록은 위원님들의 확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과 <의결안건 나>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3-27-085)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별지]와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 현황은 교통충남FM방송국은 출력 1kW이며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보령, 청양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방송사항은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입니다. 단, 상업광고방송은 제외입니다. <4>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입니다. 이상인 상임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며, 외부 전문가 6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1,000점 만점 중 총 738.7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국 운영, 시설 구축 등에 문제가 없으며, 충남 지역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성과 적절성도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난청 해소 노력, 지역 일자리 확대,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고민과 실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기술적 심사항목 모두 충족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허가 여부입니다. 충청남도의 심각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지역민의 교통안전 의식개선,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 FM방송국의 설립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되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이므로 허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신규 방송국 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은 해당 방송 개국일로부터 3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것, 방송 편성에서 교통·기상·재난 관련 정보는 포함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인접 TBN 타 방송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 확대,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 기술적 조건으로 혼신 수용, 방송주파수 정부정책 준수, 라디오 신기술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예산편성 절차 준수, 난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지난 5월에 의결된 라디오방송국 허가 정책 방안에 따라 백서 발간을 통해서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본 안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심사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상인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이번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관련한 심사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말에 12개 방송국이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서 도로교통공단이 기존 방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송국 운영이나 시설구축과 같은 신규 방송국 운영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심각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 등 지역민의 교통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충남 지역 교통FM방송국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FM라디오방송국이 신규로 개설된다는 측면에서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등용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방송수신을 위해 난청 발생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난청 해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에 담아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정적인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교통충남FM방송국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충실한 라디오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지역교통정보, 재난정보 및 지역 특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송의 지역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충남

FM방송국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혼신 발생 시 전파 간섭 해소 등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가결되었습니다.

라.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27-086)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라>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경남기업(주)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남기업(주)에 대해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2005년 5월 경남기업(주)은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SM은 경남기업(주)을 인수하고, 2021년 5월 공정위는 SM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방통위는 경남기업(주)에 1차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경남기업(주)이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23년 7월 6일 방통위는 경남기업(주)에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4> 주요내용, <가>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경남기업(주)은 SM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주택건설 등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위반 사항입니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8월 25일 의결하여 부과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습니다. 피심인은 현재까지 변동 없이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소속된 SM기업집단의 대기업 지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소유제한 위반 해소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였으나 (주)와이티엔디엠비 및 DMB 시장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 매수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시정명령 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5>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시정명령에 따라 지분매각 등 소유제한 위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DMB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유제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재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DMB 시장 여건상 주식매각이 어려운 상황인 점, 기존 처분사례 등을 고려하여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경남기업(주)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와 환경변화에 걸맞은 방송분야 소유제한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방송사업 소유·경영 관련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통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향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법령 체계 하에서는 엄연히 지키고 따라야 할 법·제도입니다. 법 위반에 따른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피심인은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어려운 DMB 시장 현실과 기존 행정처분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사무처 의견처럼 2차로 시정명령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대기업집단 문제와 언론사 소유 지분 문제는 비단 경남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있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침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규제완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나, 어떻게든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안건 가>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보고 사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사항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년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어 방통위, 문체부 등 5개 부처에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종합대책 이행사항으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과 협력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19년 7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년 12월 지상파 및 종합편성 PP의 재송인·재허가 조건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포함된 외주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이 부가되었습니다. 매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되겠습니다. <3> 점검 개요입니다. 먼저 점검대상은 '22년도에 계약된 13개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4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지역방송사 5개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320개입니다. 지역방송사 중 상반기 외주제작 프로그램 실적이 있는 방송사는 부산MBC, 대전MBC 및 부산방송이며, 하반기 외주제작 실적은 부산방송만 대상입니다. 점검방법은 방송사에서 제출한 416개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학계 및 법조계가 참석한 이행점검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은 외주제작 계약서 부분 50점, 표준제작비 산정 부분 20점, 상생협약체 운영 부분 30점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이어서 4쪽 되겠습니다. <4>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외주제작 계약서 반영 항목으로 20점이 배정된 표준계약서 활용은 계약기간, 제작비 여부 등 계약서 내용에 11개 핵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점검결과 핵심조항 11개 중 10개 이상을 준수하고 있어 지상파 및 종편PP 모두 만점을 받아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핵심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5쪽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점이 배정된 사전 계약 체결은 프로그램 촬영 시작 전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의 비율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점검결과 지상파 및 종편PP의 총점은 14.8점으로 대부분의 방송사는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및 수익배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5점이 배정된 권리합의서 작성은 권리배분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비율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점검결과 지상파 및 종편PP 모두 만점을 받았으며, 5점이 배정된 자료제공 의무 명시는 자료 제공 의무가 명시된 계약서 비율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점검결과 지상파 및 종편PP 모두 만점이었습니다. 이어서 6쪽 되겠습니다. 5점이 배정된 협찬수익 배분기준은 협찬수익 배분기준이 명시된 계약서 비율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점검결과 지상파 및 종편PP 총점은 2.2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미흡한 사항으로 방송사의 계약서에 협찬수익 기준을 명시토록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20점이 배정된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및 제시항목으로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15점, 산정기준을 외주제작사와 계약 체결 시 제시·활용하고 있으면 5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지상파 및 종편PP는 모두 만점을 받아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 체결 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7쪽 되겠습니다. 셋째, 30점이 배정된 상생협약체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부분으로 상생협약체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10점과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이 있으면 20점을 주는데 점검결과 지상파 및 종편PP는 모두 만점을 받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협약체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점항목입니다. TV조선 및 MBN은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각각 2점이 감점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를 종합하면 '22년도 지상파 방송사 및 종편PP 평균은 96.7점으로, 3년 연속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표준계약서 활용,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및 활용, 상생협약체 운영 계획 및 실적은 만점을 받아 가이드라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항목 중 '협찬 기준 명시'는 준수 비율이 미흡하게 나타났는데 계약서에 지속적으로 협찬 기준 명시 안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행점검 결과를 방송사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방송시장 환경 속에서 지상파 및 종편PP의 가이드라인 이행 실적 평균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점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점검항목 중에서 협찬항목 명시와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방통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의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점검 대상 방송사의 3년 연속 평균점수가 '20년에 91.3점에서 '21년에는 95.7점 많이 향상됐고, '22년에도 96.7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그다음에 제작비 산정기준, 상생협약체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안내와 독려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접수되었습니다.

【 10시 24분 】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23-27-083)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23-27-084)

【 10시 30분 】

8.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1분 폐회 】